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헌법교육 정기적 실시 의무화〉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헌법교육 정기적 실시 의무화〉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3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위성근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위성근의원안】 (지방공무원법)	3
II.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6

I. 개 요

【위성곤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2.
3. 회부연월일 : 2025. 11.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위성곤의원안】 (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¹⁾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u>제50조의2</u> ,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 ----- ----- ----- <u>제50조의2</u> , <u>제50조의3</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제50조의2(헌법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헌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u>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u>제50조의2</u>(적극행정의 장려) (생략) 제78조(징계 사유)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u>제50조의2</u>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u> <u>제50조의3</u>(적극행정의 장려) (현행 제50조의2와 같음) 제78조(징계 사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제50조의3</u>----- ----- -----.
---	--

2. 검토의견

헌행법에서는 공무원 취임 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²⁾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2)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별표1, 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교육훈련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인재개발지침(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며,⁴⁾ 이에 따라 신입관리자과정, 7급·9급 신규자과정, 공직가치 실천과정 등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헌법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⁵⁾과 같이 각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인재개발지침)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개발에 필요한 사항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바,⁶⁾⁷⁾ 교육 관련 사항은 동법에 규율되는 것이 입법체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이고, 현재의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헌법 교육을 포함하거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2025년 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계획>

1. 기본교육: 국장급과정, 과장급과정, 국·과장급과정, 5급과정, 6급이하과정(세부 14개)
2. 공직가치·국정비전 교육: 국정비전과정, 공직가치과정(세부 7개)
3. 공직리더십교육: 역량향상과정(세부 5개)
4. 글로벌 교육: 글로벌기본교육과정, 글로벌전문교육과정, 국외훈련과정(세부 12개)
5. 외국공무원과정직무·전문성 교육: 공통직무역량과정, 디지털역량 과정(세부 33개)
6. 이러닝 교육(1,050개)

7) 지방공무원의 교육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체계상 인재개발 관계 법령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도 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의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통해 2026년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상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